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 제정 : 2001. 4. 27.
- 개정 : 2003. 4. 27.
- 개정 : 2014. 3. 1.
- 개정 : 2016. 6. 1.
- 개정 : 2017.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창업지원단(이하 “창업지원단”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창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이 규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과 장소 제공
2. 자금지원·알선
3.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4.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5. 창업 후 성장 지원
6.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 및 입주
7.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센터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2. “졸업”이란 입주자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입주계약기간 만료 등 이 규정 제25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장지원”이란 홍보·마케팅·엔젤투자 지원 등 창업 후 성장단계의 지원을 말한다.
4.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여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육실”이란 센터가 창업보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입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보육 공간 또는 입주자들을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입주개시일”이란 입주계약서에 정한 입주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
7. “창업보육전문매니저”란 창업보육관련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센터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
2. 창업보육매니저
3. 행정팀
4. 운영위원회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1. 창업 또는 기업경영(CEO) 유경험자
2. 민간기업체 경력 10년(임원) 이상 보유자
3. 창업보육전문매니저 10년 이상 경력 보유자

4. 보육센터장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5. 기타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경력 15년 이상 경력 보유자 등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준하는 경력이 인정되는 자

② 센터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④ 센터장이 교수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수업시수 배정, 연구실적 산정 등에 있어 입주기업 보육성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보육매니저)

① 입주자에 대한 창업보육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를 둔다.

② 창업보육매니저 최소 1인은 창업보육전문매니저로 하며,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으로 한다.

③ 창업보육매니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정팀)

① 센터의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팀을 둔다.

② 행정팀장은 본교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한다.

③ 행정팀 내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센터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팀장이 한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대상의 심사·선정
2. 센터 운영성과 평가
3. 입주기업의 사업운영평가 및 입주연장 심사
4. 성장지원 대상 평가 및 심사
5. 기타 센터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제12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제11조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입주및지원

제13조(입주신청자격)

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제14조(입주자 선정기준)

- ① 입주 신청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보육센터에 입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보육센터 졸업기업의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다.
- ③ 본교의 교수·연구원·창업기업 및 학생 예비창업자는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 ④ 센터가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분야의 입주 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
- ⑤ 기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심사 및 평가, 심사기간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 ① 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5조 소정의 성장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입주자에 대하여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명공학과 나노 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운영하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각각 그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 ①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대상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센터 소정의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하여야 한다.
-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센터에서 지정하는 입주 기일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입주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계약자는 지정된 입주기일 10일 전까지 연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입주승인 취소)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 소정의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18조(입주부담금)

- ① 센터는 이 규정에 따른 보육에 대한 대가로 입주자에게 일정의 경제적 부담(이하 “입주 부담금”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입주자가 입주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입주부담금 산정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보험가입)

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는 입주자에게 분담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제20조(시설지원등)

센터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육실’에 관련 시설 및 설비를 해당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경영기술지도및연수)

센터는 입주자의 경영 능력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도 및 연수에 필요한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 5 장 시설물의 관리

제22조(시설의 사용)

- ① 입주자는 센터의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는 공동이용설비와 회의실 등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시설관리 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입주자는 센터 내부에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득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퇴거 및 졸업할 때에는 반드시 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의무)

입주자 및 그의 참여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해당 입주자는 그 손해를 센터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반입)

- ① 입주자는 인화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센터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방재관리)

입주자는 센터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정 및 센터 내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 금지
2.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신고
3. 센터 또는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방재관련교육에 참가
4. 그밖에 센터에서 방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방재관리 제 규정의 준수

제27조(입출입 관리)

입주자는 보육실의 입출입과 관련하여 센터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제28조(출입)

센터는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의 보육실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 6 장 졸업 및 퇴거

제29조(졸업)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있다.

1. 입주계약 만료 시
2. 창업 10년 이상인 입주자
3. 입주자가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내에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성장지원을 통하여 사업안정화단계에 도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센터장이 승인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졸업대상자는 졸업 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졸업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졸업여부 결정한다.

제30조(졸업준비)

졸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일 이후로 사업장 이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유서를 졸업일 1개월 이전에 센터에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센터장은 졸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 준비기간을 갖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31조(퇴거)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보육실을 사전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2.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예비창업자가 입주 후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못한 경우
4.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의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업무방해 등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 6.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 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7. 센터 입주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8. 센터의 창업보육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9. 기타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30일전까지 퇴거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거예고통보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희망일 30일전까지 센터에 퇴거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입주자의 퇴거에 따른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진도관리 및 성장지원

제32조(실태조사)

- ① 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분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입주자는 실태조사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33조(실태조사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 ①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입주자별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등으로 평가한다.
- ② 센터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으로 불량 등의 평가를 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2회 이상의 불량 판정을 받은 자는 경고조치, 3회 이상의 불량 판정을 받은 자는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34조(변경통보의무)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센터로부터 승인받은 제품개발 계획의 변경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창업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된 신기술제품 개발계획서와 사유서
2. 그 밖의 변경 통보에 필요하거나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35조(성장지원)

① 센터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입주자에 대하여 R&D, 홍보, 마케팅, 자금지원 등 사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정한 성장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운영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36조(재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지원기관의 출연금 및 지원금
2. 본교의 지원금
3. 입주자 부담금 및 기여금
4. 창업보육사업에 관하여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지원금
5. 센터사업의 성과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 등
6. 기타 수입금

제37조(회계)

- ① 센터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창업지원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② 입주자 부담금, 투자수익 등의 센터 수입은 입주자 육성 등에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예·결산및사업)

센터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서, 결산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기 타

제39조(세부사항)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1. 이 제정 규정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